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정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6조)
- 안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18조)
-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 ~ 안 제22조)

3. 검토의견

-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정의는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이고
-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제5항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므로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립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제2항제2호에서는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 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세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 이 조례는 안산시의 모든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조례의 성격을 가지므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시에 안산시의 모든 조례와 행정에서 이 조례가 잘 적용될 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주기 변경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어 정리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2. 주요내용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주기 변경(안 제3조)
- 교통영향평가 용어 변경(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3장,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별표1 등)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3. 검토의견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3조(정의)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중기계획 수립시기를 10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됨.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정이유

-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 마련
- 지하수이용부담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산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2. 주요내용

-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3조)
 -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16조)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24조)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3. 검토의견

-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이 조례는 「지하수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조(목적)에서 「지하수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준수하고 조례입법의 “한정성 원칙”과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수정방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령 등에 따라 안산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는 조례입법의 “기술 원칙”과 “명확성 원칙”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정방향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개발·이용자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경우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의 부령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안 제22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는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수정방향

제22조(계측기의 설치·관리) ① 개발·이용자는 부령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 안 제23조(준용)는 조례입법의 “부합성 원칙”과 “합법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일부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정방향

제23조(준용)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44조 별표 7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조례입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문 내용의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